

##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Copyright Issues to User-Contributed Content i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김수진(Kim, Su-jin)\*\* · 신동희(Sinn, Donghee)\*\*\*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이용자기여콘텐츠(User-Contributed Content)의 정의 및 유형
4.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저작권
  - 1) 이용자기여콘텐츠 관련 국내 저작권 규정
  - 2) 국외 저작권 규정
5.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규정 사례
  - 1)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와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 2) 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POYi) Archive
  - 3) Our Marathon, the Boston Marathon Bombing Archive & WUBR Oral History Project
  - 4) People's Collection Wales
  - 5) Digital Archive of Japan's 2011 Disasters
  - 6)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관련 제언
  - 1)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명시
  - 2) 콘텐츠 등록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
  - 3) 이용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 명시
7. 맺음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6027).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dkssudkim4@naver.com) (제1저자).

\*\*\* University at Alba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Associate Professor(dsinn@albany.edu) (교신저자).

■ 투고일 : 2016년 7월 4일 ■ 최종심사일 : 2016년 7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2일

## 〈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적법하게 기록물을 수집,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고려해야하는 저작권 및 여러 법규의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법규의 해석, 침해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 활동을 모색하였다.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아서 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분명한 기준과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해야하고, 콘텐츠 기여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한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시해야하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 콘텐츠의 이용 범위, 인용방식에 대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저작권을 소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 이용약관, 저작권,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Creative Commons Licenses**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should handle user-contributed content in order to legitimately collect from and make available to users according to current copyright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In doing so, this study surveys the cur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that would apply for digital contents in archives. It also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analyzes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and specific infringement

cases. Then, it examines the cases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as to how they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to user-contributed content and provide guidance to users in this respect. Based on such analysis, the study suggests a few methods of how digital archives acquire necessary rights for the user-contributed content being housed in archives and how they provide useful guidance to users abou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se methods include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ibution/service and essential elements in terms, contributor agreements and their details, and other user guidelines.

**Keywords :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ibution and Service, Copyrights,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Creative Commons Licenses**

## 1. 머리말

디지털방식으로 정보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이미 현대인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상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정보를 공유한다. 이용자의 참여는 디지털 문화가 되었고, 많은 문화정보기관 역시 이용자들을 단순한 관람객이나 수동적인 고객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의 제공, 운용, 이용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가담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사례는 박물관, 도서관 등의 소셜태깅 서비스<sup>1)</sup>부터 이용자들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이용자들이 직접 개입하여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크라우드소싱 서비스<sup>2)</sup>까지 그 형태와 참여방식이 다양하다. 더욱

---

1)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 경우만 소개해보면, 경기도 미술관(gmoma.or.kr), 필라델피아 미술관(<http://www.philamuseum.org>) 등의 소셜태깅 서비스가 있다.

2) 브루클린 박물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예술품을 제출하고 평가하게 하는 'Click!' 서비스를 시행하였고(<https://www.brooklynmuseum.org/exhibitions/click>), 미국 국립기록청에서는 이미지파일로 된 문서를 이용자들이 전사하도록 하여 키워드검색이

적극적인 사례로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컬렉션의 내용을 채워가는 경우까지 존재한다.<sup>3)</sup> 특히 학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집단 기억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 유통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시하는 풍부한 관점과 맥락은 역사적 해석과 이해의 다양성,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디지털 프로젝트들이 시민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상기록의 중요성, 지역기록의 중요성이 현 기록학계에 중요한 화두도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설문원 2011; 설문원 2012b;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이렇듯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정보 활용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학술연구와 사회기록에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용자가 기여한 정보의 저작권이나 활용에 관한 법적인 규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도 디지털 출판물의 저작권과 문화정보기관의 법적인 권한에 국한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예를 들면,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인 권한에 대한 연구는 이용자제작콘텐츠<sup>4)</sup>를 위해 만들어진 상업사이트(Youtube, Flickr 등)에 저장된 내용

---

가능하도록 하는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https://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

3)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September 11 Digital Archive'가 있다(911digitalarchive.org).

4) 'User-Generated Content'는 '이용자생산콘텐츠'(손정민 2016, 31), '사용자제작콘텐츠'(윤영민 외 2011, 140; 김정환, 김성철, 윤영민 2011, 33)로 번역되고 있으며, 'User-Created Content'는 '이용자제작콘텐츠'(우지숙 2008, 79; 이대희 2007b, 69; 정진명 2007, 234), '이용자생성저작물'(이종운 2010, 67), '사용자제작콘텐츠'(양형규, 최종호 2010, 36; 이대희 2007a, 206; 최경진 2007, 48)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에서는 'User-Created Content'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고 하였으며, 국립국어원에서는 UCC를 "순수제작물"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제작콘텐츠'라고 번역하였다.

을 기초로 논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술목적이나, 문화정보기관에서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디지털 아카이브 환경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이용자들이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권한의 출처, 유예 및 양도에 관한 연구, 이용자들의 콘텐츠로 구성된 디지털 컬렉션을 활용하고 공공에 제공하기 위한 법적인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영리 목적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활용되는 이용자기여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관련하여 현행 법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넓게는 디지털 아카이브 환경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연구이므로, 선행연구는 크게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이용자제작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이용자의 참여가 전제가 되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제작되면서, 과거의 단순한 정보소비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문화역사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그 역할이 변해가고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면서 기록과 기억 생산의 주체로서의 이용자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설문원 2012b;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현문수 2014;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Haskins 2007; Huvila 2008). 이용자 참여형 아카이브라는 형식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설문원(2011, 2012a, 2012b)은 여러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로컬리티 기록화(지역기록화)에서 지역주민이 중요한 기록생산 주체임을 확인하였다. 즉, 로컬리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

카이브 포털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하고 제도도를 마련하여 구축할 수 있겠지만, 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운동 차원으로 수집기관과 공동체 간에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설문원 2012b).

하나의 사례로서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2014, 281)은 부산 영도 지역의 조선 산업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참여자 그룹을 전·현직 노동자와 노동자 주변인물을 포함하여 4유형으로 나누고, 오메카의 플러그인 중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참여 방법으로는 전사(transcription), 의견 달기(comment), 기록 기증, 태그 달기 등이 있었으며, 특히 웹상으로 이용자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야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들이 기증할 때 “기증 기록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 익명으로 기부할 것인지 여부,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증 조건에 동의하는 여부 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아카이브에서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집, 활용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은 재산권, 학문·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의 권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sup>5)</sup>,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sup>6)</sup>,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sup>7)</sup>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다(권형돈 2007b; 김윤명 2007; 이호신 2013; 최경진 2007).

이용자제작콘텐츠와 관련하여 법적인 침해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법」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복제권, 전송권 등이

---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년을 끝으로 타법폐지 되었다.

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2010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2844호)다.

7)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3520호)로, 「정보통신망법」이라 약칭한다.

있다(우지숙 2008; 이대희 2007a; 이대희 2007b; 최경진 2007).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기존에 마련된 디지털 시스템에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므로, 파일을 ‘복제’하고 ‘전송’하여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인 이용자 이외에도 시스템(혹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자/운영자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로서 원저작자의 권리와 상충할 수도 있게 된다. 김윤명(2007, 167-171)은 원저작물로부터 생산된 2차 저작의 경우(데이터베이스 제작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제3자의 이용에 의해 저작재산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OSP에 의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OSP 책임문제와 「정보통신망법」상 OSP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는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 3), 인용(「저작권법」 제28조) 등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정보기관인 국내외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기관에서는 ‘보존용·열람용 복제’ 시에 문제가 되는 복제권, 동일성유지권과 ‘온라인 공개 및 전시’ 시에 문제가 되는 공중송신권 등도 기관의 법적인 책임성과 관련하여 분명히 고려해야하는 내용이다(조정옥 2015, 25-28).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법률상 접근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경진(2007, 49)은 사용자제작콘텐츠(User-Created Content)를 사용자창작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와 사용자가공콘텐츠(User-Modified Content)로 구분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최상필(2010, 184)은 사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를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창작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사용자가공콘텐츠(User Modified Content), 사용자재생산콘텐츠(User Recreated Content)로 구분하였다. 기존 콘텐츠의 단순 복제물은 UCC라고 할 수 없으며(최상필 2010, 188), 만약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사적 복제의 항변이 가능하나 인터넷에 게시되는 UCC의 경우에는 ‘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양형규, 최종호 2010, 36-37; 최상필 2010, 191). 공표권은 미공표저작물을 허락 없이 변형한 UCC의 경우에 문제가 되고, 성명표시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은 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한 가능하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28조의 인용 규정, 공정이용법리 등을 항변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 및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최상필 2010, 191).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기여콘텐츠가 가져다주는 문화의 풍부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문화의 향상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최경진(2007, 60)은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용권 도입,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UCC 활용성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CCL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보급”에 힘쓰고, UCC의 이용, 제작 및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나 전자적 저작권 유통 체계의 구축 등 실현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형 디지털 콘텐츠물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선수(2006, 370-371)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저작권 관리 체계 방안”으로 “저작권 위탁 관리 시스템”과 CCL의 제시가 콘텐츠 유통 및 콘텐츠물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UCC의 이용을 촉진시킬 방안으로, 김윤명(2007, 185)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퍼블릭 도메인의 확대가 필요하며, UCC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이용을 확대시킬 방식으로 제한적 이용허락제도, 표시제도, CCL 등을 고려하였고, 이 중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CCL을 선택하였다. 서준호(2012, 96-103)는 UCC 활성화 방법으



로 Digital Rights Management(이하, DRM)와 CCL을 검토하면서, DRM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가치를 둔 반면, CCL은 “자발적 이용허락으로서 저작물 공유에 기여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DRM이 가지는 한계 등을 근거로 CCL이 보다 나은 대안임을 주장하였고, UCC 활성화 방안으로 “UCC의 합법적인 유통환경 구축, UCC를 이용하는 자의 저작권 존중태도, UCC저작권의 집중관리시스템 마련, UCC의 등록시스템 마련, CCL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 역시 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 환경에서 더 손쉽게 대중에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는 사회의 역사, 문화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연구자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록관은 “전통적인 아카이브나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를 넘어선 디지털 콘텐츠물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선수 2006, 357). 어떤 형태건 아카이브에서 기증받는 기록문화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하며(이철남 2011, 2013), 콘텐츠의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작권은 분명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 참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저작권 관련 권리 분석 및 침해 시 항변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방식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콘텐츠의 이용허락 범위 및 안내 방법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 3. 이용자기여콘텐츠(User-Contributed Content)의 정의 및 유형

“전문저작자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주로 작성되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의하여 이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권형돈 2007a, 4)

이용자제작콘텐츠(User-Created Content)는 미디어와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OECD-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2007, 8). 김윤명(2007, 162) 역시 UCC를 “고유의 개념이나 범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정진명(2007, 234)도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일반이용자가 제작하여 웹상에 공표한 콘텐츠를 지칭하는 단어도 이용자생성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 이용자제작콘텐츠(User-Created Content, UCC), 이용자기여콘텐츠(User-Contributed Content, UCC), 이용자수정콘텐츠(User-Modified Content, UMC) 등 다양하다.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용어들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는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인이 만든 자료나 정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김윤명 2007, 162; 정진명 2007, 234). 이 용어들에 대해 학자마다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특성이 있으나 대체로 동의되는 부분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이(황용석, 주용완 2006, 4; Daughertya, Eastina & Brighta 2008, 19) 스스로 제작한(정진명 2007, 234; 조원 2014, 4) 비직업적 활동의 결과물로 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다(황용석, 주용완 2006, 4; Daughertya, Eastina & Brighta 2008, 19)는 점이다.

그러나 이용자제작콘텐츠라는 용어 중 ‘제작’이 담고 있는 ‘창작’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논란이 있다. 권형돈(2007b, 381)은 User-Generated Content와 User-Created Content 중에서 “이용자의 순수 창작물이란 의미를 고려할 때 User-Generated Content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힌 반면, 임광섭(2010, 75)은 “‘created’라는 표현에는 ‘창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반해, ‘generated’는 ‘창작’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또는 제작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User-Created Content를 엄격히 적용하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준호(2012, 2)는 “UCC가 유저가 순수하게 만들어낸 자료를 가리키는 반면

에, UGC는 UCC에 더하여 퍼온 자료도 포함”하며,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등록한 자료는 UCC보다는 UGC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김윤명(2007, 162-164)은 최근 UCC를 패러디한 User-Copied Content(이용자복제콘텐츠)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고 밝히고, 창작성이 결여된 UCC는 “가공되거나 제작된(generated)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늘날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면서 ‘created’와 ‘copied’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UGC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User-Contributed Content(이용자기여콘텐츠)라는 용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User-Created Content, User-Generated Content, Consumer-Generated Media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제공자가 고용한 사람이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런 정보에 있어 일반적으로 ‘기여자’와 ‘이용자’는 그 구분이 분명치 않다(Jian & MacKie-Mason 2012, 1). 문화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개념적인 포괄성으로 궁극적으로는 ‘user-contributed’의 개념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예를 들면, 물리적 위치에서 음향 정보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s)의 생성을 다룬 Janer, Roma & Kersten(2011)의 연구에서는 user-contributed content, user-contributed sound, user-contributed tags and descriptions, user-contributed repository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user-contributed content로부터 집단 지성의 다양한 계층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 Solachidis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user-contributed resources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Sedgwick(2008)의 연구에서는 user-contributed annotation(이용자가 제공한 설명)과 archivist-contributed annotation(아키비스트가 제공한 설명)으로 구분하는 등,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에 ‘user-contribut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창작성’이란 가

치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콘텐츠와 그 콘텐츠와 연관되는 다양한 정보(주석, 태그 등)까지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이용자가 기여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상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용자 역시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공유할 때 그것이 창작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이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소셜태그, 단순한 사실 적시, 의견 게재, 자신이 소장한 자료 공유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창작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기여콘텐츠(User-Contributed Cont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형식이나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공표한 콘텐츠라 정의하고자 한다.

#### 4.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저작권

디지털 아카이브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된 태생적 디지털 형태(born-digital)와 아날로그로 제작되었다가 후에 디지털화된 형태(digitized)를 모두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들은 복제, 내용 변경, 조작 등이 용이하고 그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원본과 사본간의 경계도 불명확하므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며(권형돈 2007a, 2-3),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는 썬인 디지털라이징(digitizing) 역시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신지혜 2009, 29-30). 여기에 이용자가 기여한 자료까지 더해진다면,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복잡성은 더욱 심화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권 문

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소장 자료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에게도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

## 1) 이용자기여콘텐츠 관련 국내 저작권 규정

이용자기여콘텐츠 문제는 저작권자, 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이 연관되며(권형돈 2007b, 382; 최경진 2007, 51), 저작권,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음란 콘텐츠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대희 2007b, 69).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이용자기여콘텐츠를 아카이브에 공유할 때 발생할만한 「저작권법」상 침해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sup>8)</sup>에 따르면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이외에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및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다. 선행연구 중 이용자기여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용자기여콘텐츠가 침해 가능한 저작권을 살펴보면,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전송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8) 현행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행 시점을 고려하여, 법조문의 변경이 없는 조항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명시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용자기어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연구자	침해받는 권리											기타 권리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전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김윤명 (2007)	\	○	○	○	\	\	\	\	\	\	○	○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서준호 (2012)	△	○	○	○	△	\	\	\	\	\	\	○	편집저작물작성권, 실연자의 권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권
양형규, 최종호 (2010)	△	△	○	○	\	\	\	\	\	\	\	○	\
우지숙 (2008)	\	\	○	\	\	\	\	\	\	\	\	○	\
이대희 (2007a)	\	○	○	\	\	\	\	\	\	\	\	○	\
이대희 (2007b)	△	△	○	○	\	\	\	\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중윤 (2010) <sup>9)</sup>	\	\	○	○	\	\	\	○	\	○	○	\	\
최경진 (2007)	\	\	\	○	\	\	\	\	\	○	○	\	\
최상필 (2010)	○	○	○	○	\	\	\	\	\	○	○	\	\

△ 표시 : 언급은 하였으나, 본문에서 검토하지 않은 권리

○ 표시 : 언급도 되고, 본문에서 검토도 된 권리

\ (대각선) 표시 : 언급하지 않은 권리

따라서 본 장에서는 〈표 1〉에 나타난 권리 중 2명 이상의 연구자에 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저작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단,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개정 때 전송권이 삭제되고 공중송신권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송권을 대신하여 공중송신권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을 살펴보면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

9) 이중윤(2010, 79-80)은 도서관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링크할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였다.

10) 「저작권법」(법률 제6134호) 제18조의2에 전송권을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신설하였다가,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때 전부개정 되면서 방송권, 전송권이 삭제되고 공중송신권, 대여권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로(제11조),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5호). 여기서의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제2조 제24호), 발행에는 “시각적인 복제물” 외에 “녹음물, 녹화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복제물”의 배포도 포함된다(김정술 1992, 282).

공표권의 내용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 방법 내지 형태의 결정, 공표시기에 대한 선택 등이 있다(김정술 1992, 283; 이해완 2007, 249).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미공표저작물이라도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공표가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허락, 미술저작물의 원본 양도, 2차적 저작물의 이용 등 저작물 이용행위에 전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급을 한다면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김정술 1992, 282; 이해완 2007, 250). 해석상 “공표권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최초의 행사에 의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한번 공표된 저작물은 다른 매체에 허락 없이 공표되더라도 공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김정술 1992, 283).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최초에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하였다면, 그것으로 공표권은 소멸되고, 이후 다른 이용자가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웹사이트에 공유한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적어도 공표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 또는 복제물 등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로(제12조),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자가 공표 당시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석상 저작자가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고 무명으로 공표

할 권리도 포함되므로, 설령 저작자가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무명의 저작물에 허락 없이 저작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김정술 1992, 285).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인격적 권리로 규정한 것이고, “이에 관한 모든 결정은 저작자만이”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고,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결정여하에 따라야만 한다”(윤용근, 하병현 2013, 114). 그러므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 시 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실명이나 이명을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하고, 만약 저작권자가 익명으로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인용 시나 기타 활용 시 익명의 저자가 제공한 것임을 명시해야한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제13조), “저작물 존중권, 저작물의 불가침권”이라고도 한다(유대중 외 2010, 66). 동일성유지권에서의 내용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뜻하며, 형식이란 “저작물의 구성, 동기, 문장형식, 표현방법 등”을 의미한다(김정술 1992, 289; 유대중 외 2010, 65-66).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은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배대현 2006, 166; 허희성 2011, 141).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문법교정 정도는 허용된다 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유대중 외 2010, 66). 본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익 또는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예를 들면, 다른 컴퓨터 환경에서 이용가능하게 변경)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경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변경은 저작권자라 할지라도 이의할 수 없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보유하는데 이것을 복제권이라 하고(제16조), 미공표저작물이라도 저작자는 복제권을 가진다(김정술 1992, 296).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2호). 법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쇄·사진 등의 가시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녹음·녹화 등의 재생 가능한 복제가 포함”까지 포함된다(이해완 2007, 301-302). 홍재현(2008, 104)은 도서관 등 정보제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제 행위를 설명하였는데, “인쇄형태의 저작물을 복사기 등으로 복제하는 것은 물론 종이기반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하드디스크나 디스켓, 온라인데이터베이스, CD-ROM 등의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인쇄형태로 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라고 한다면, “저작물의 공연·방송·연주·가창·연술(演述) 등은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중송신권, 공연권, 방송권 등으로 규정한다(이해완 2007, 302). 그러나 이러한 “무형적인 이용”을 유형물(예, DVD 제작)에 고정할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된다(김정술 1992, 296). 전체가 아닌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원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복제하고, 복제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윤용근, 하병현 2013, 91). 2011년 「저작권법」(법률 제 11110호)의 일부개정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에 따라 일시적인 복제도 포함하였다. ‘일시적인 복제’란 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컴퓨터로 처리하고 활용할 때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할 때, 그 저작물이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1993년 미국에서 있었던 MAI System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윤용근, 하병현 2013, 95).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복제행위이며, 잠시 열람하는 것도 ‘일시적 복제’에 해당되게 되므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자료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적법한 복제의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공중송신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로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공중송신권은 2006년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개정 때 신설된 것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나타난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등 모든 송신행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이해완 2007, 311), “공중에 대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모든 형태의 이용행위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유대중 외 2010, 51; 윤용근, 하병현 2013, 99-100).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까지도 공중송신의 범위에 해당되며(윤용근, 하병현 2013, 100), 공중송신권에서의 “이용제공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수반하게 됨으로 복제권의 침해”까지 야기한다(유대중 외 2010, 51-52). 앞서 살펴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의 범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용자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되며, 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행위임으로 복제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제22조)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

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는데, 이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이해완 2007, 129).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수정이 아닌, 사회통념상 원저작물과 다르다고 인정될만한 창작성이 필요하나(김정술 1992, 310; 오승중, 이해완 2005, 101),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가 아닌 수준의 실질적 유사성도 요구된다(이해완 2007, 120).

동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저작자의 관계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2차적 저작물의 보호에도 여전히 영향 받지 않고 보호받음을 의미한다. 즉,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저작권자의 허락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적법요건”인 것이다(이해완 2007, 130-131).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는 자는 먼저 저작권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본질적인 부분까지 변경하고 싶다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윤용근, 하병현 2013, 1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기여콘텐츠와 관련되는 「저작권법」상 권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러한 권리 관계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국외 저작권 규정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를 제한할 수 없으며 국내외 이용자가 방문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 관련 기본 개념을 검

토하여 아카이브 구축과 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규정은 크게 국가 간에 체결한 협약과 각 국의 국내법이 있다. 먼저 체결국 사이에 적용되는 저작권 관련 협약으로는 대표적으로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1971년 파리 개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1996(WPPT)」,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1971년 파리 개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른협약」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인정 및 보호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bis조에 도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 중 1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이와 별개로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와 특정한 수정 및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8조에는 번역에 대한 권리, 제9조에는 복제/재생산에 대한 권리, 제10조 중 3에서는 인용 시 나타나는 저작자 표시, 제11조에는 연극과 음악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1bis조에서는 방송 및 관련 권리, 제11ter조에서는 문학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2조에서는 개작, 각색(편곡), 기타 변경에 대한 권리, 제14조와 제14bis조에서는 영화 및 관련 권리와 특별 규정, 제15조에서는 저작자의 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계저작권협약(1971년 파리 개정)」의 제4bis조는 공연 및 방송, 어떠한 방식이던 간에 복제 및 재생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규정이다. 제5조에는 번역을 하거나 번역을 발행할 권리에 대한 것이며, 이후 제5ter조까지 번역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다. 번역에 관련된 권리를 이렇게 자세히 규정한 이유는 이 협약이 각 국가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 국가에서 발행된 저작물

을 다른 국가에서 번역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제5quater조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특정판에 대한 내용이며, 제6조에서는 저작물의 배포를 위한 발행에 대해 규정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은 제6조에 배포권, 제7조에 대여권, 제8조에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협약들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각 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 실제 저작권 분쟁에서는 각 국의 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세계 각 국의 법을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래 사례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속한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은 「저작권법(Copyright law)」 외에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Limitation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등 다양하다(Wikipedia n.d.). 미국의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circular 92)」을 살펴보면, 제106조와 제106a조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제106조에는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첫째, 복제에 대한 것, 둘째,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것, 셋째, 대여(rental), 리스(lease), 대출(lending), 소유권 이전 또는 판매에 의한 복제물 또는 음반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것, 넷째, 어문, 음악, 연극, 무용 저작물, 무언극,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 다섯째,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공개적인 전시에 관한 것, 여섯째, 녹음물

등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 등을 규정한다. 제106a조에는 저작자의 속성(attribution)과 무결성(integrity)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2011)에 따르면 이것은 국내 규정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해당된다.

영국의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를,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2차적 침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16조를 살펴보면 저작권자는 복제 행위(제17조 참조),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행위(제18조 참조), 저작물을 공중에 대여 또는 대출하는 행위(제18A조 참조), 저작물을 공중에 공연, 전시 또는 재생하는 행위(제19조 참조),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제20조 참조), 저작물의 개작물을 만들거나 개작과 관련하여 위의 어느 행위를 할 수 있다(제21조 참조).

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외에도 2차적 침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데, 불법 복제물을 수입하는 것(제22조), 불법 복제물을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것(제23조), 불법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제24조), 불법 공연을 위한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제25조), 불법 공연 등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제26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면서 소장 장서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과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 이하 TNA)은 적법한 기록물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각 정부 부처나 다른 아카이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저작권에 의거한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 및 연락방법 등을 고시하고 안내하는 것은 해외 기록관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 5.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규정 사례

국내외의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의 참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기여콘텐츠는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기관이 아니라는 점,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다는 점, 기증방식도 여러 가지라는 점 등 저작권과 관련해서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각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용자기여콘텐츠를 수집,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작권을 명시하고 분쟁의 우려를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September 11 Digital Archive(이하, 911 디지털 아카이브)와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이하, 허리케인 기억은행)

선행연구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자 형태의 매체를 이용하여 2001년 9월 11일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난 테러의 역사를 수집, 보존, 제공하고자 하는 아카이브이다. 이 아카이브는 911테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직, 간접 경험자들로부터 직접 수집 받아 기록물을 축적하였는데, 총 15,000건이 넘는 디지털 아이템을 저장하고 있으며, 미의회도서관과 협약하여 의회도서관에서 장기보존하기로 하였다.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메뉴 중 'Contribute'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 가능한 콘텐츠의 유형은 이야기, 사진 또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이며, 콘텐츠를 공개하는 것, 익명으로 기여하는 것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제공 시에는 반드시 '기증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팀이 개발하여 2005년도에 개설된 허리케인 기억은행도 전자형태의 매체를 이용하여,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와 리타

(Rita)에 대한 디지털 기록을 수집, 보존, 제시한다. 이용자는 ‘Add to Memory Bank’ 링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하는 이용자는 이야기, 이미지, 오디오 중 원하는 유형,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웹에 공표된다는 것, 사이트에 익명으로 게재하겠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증 약관’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 사이트는 구글맵을 매쉬업(mash-up)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지리정보를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정보로 이름과 이메일, 허리케인 이후 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 허리케인 동안 살던 지역에 관한 정보, 2005년 허리케인 때문에 이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태어난 해, 직업,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두 사이트의 기증 약관은 <표 2>와 같다.

기증 약관에 나타난 바와 같이,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권리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양도하게끔 하고 있고, 대신 비영리,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저작물과 동시에 저작권을 함께 기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를 알리는 공지이다. 이외에도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적절한 인용방식을 안내해준다. 예를 들어, ‘1944.jpeg’라는 제목의 이미지는 “‘1944.jpeg,’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accessed [접속일자], <http://911digitalarchive.org/items/show/33649>.’로 인용표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sup>11)</sup> 허리케인 기억은행에서도 911 디지털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콘텐츠에 적절한 인용방식을 안내해 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용자가 기증한 자료를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본을 반환해주지도 않으므로 별도로 사본을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카이브 운영상의 효율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11) ‘1944.jpeg’의 URL은 <http://911digitalarchive.org/items/show/33649>이다. [accessed 2016.05.27.].



〈표 2〉 911 디지털 아카이브와 허리케인 기억은행의 기증 약관

기증 약관

저작물을 제공하려면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911 디지털 아카이브[허리케인 기억은행]와 관련하여 모든 매체의 자료를 영원히 배포 및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저작물이 디지털 아카이브[기억은행]의 웹사이트에서 공표되어 대중들이 활용하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sup>12)</sup> 만일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결정은 아카이브[기억은행]를 이용하는 승인된 연구자에게만 공개될 것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저작물은 반드시 당신이 직접 생산한 것이어야 하고, 온전히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공공의 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이나 문학 등 다른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복제하거나 기초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제공한 저작물은 기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제반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본 아카이브[기억은행]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당신이 기증한 자료가 아카이브[기억은행]와 아카이브[기억은행]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당신의 자료가 기증될 수도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기록관)에게 자료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 명예훼손, 허위진술(여기에 나열된 것에 한정되지는 않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청원이나 책임으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카이브[기억은행]는 당신의 저작물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저작물을 제출하고 나면, 제출한 저작물의 사본이 이메일로 보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출한 저작물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며, 별도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아카이브는 당신의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를 상업적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POYi) Archive(이하, POYi 아카이브)

‘올해의 국제 사진(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 POYi)’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포토저널리즘 시상프로그램이다. POYi는 보도사진 수상작들만을 모아서 대중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며, 역사적 사진에 대한 38,000개의 사진을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POYi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

12) 허리케인 기억은행은 이 문구 뒤에 “당신이 표시한 바에 따라 당신의 실명 또는 익명으로(with or without your name, depending on what you have indicated)”라는 문구가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

츠를 직접 올릴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는 아니지만, 제3자(각 언론사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약관’을 참고할 만하다. 저작권과 사용에 관한 안내는 ‘About the Archive’ 내 ‘Copyrights & Usage’에 나와 있으며, 해당 내용은 <표 3>과 같다.

POYi 아카이브 약관의 특징은 사진기자과 언론사의 허락을 받아 POYi 아카이브에 전시한 것일 뿐, 사진사나 언론사에 사진의 저작권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POYi의 사진을 출판 등, 학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다. 이는 저작권과 저작물을 함께 양도받는 형식의 911 디지털 아카이브나 허리케인 기억은행과는 다르게 저작권에 접근한 것이다. 일반적인 저작권 존중 규정 이외에도, POYi 아카이브는 앞선 두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도록 예시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Urgency’라는 제목의 이미지는 ‘Espen Rasmussen, “Urgency,” in POYi Archive, Item #46223, <http://archive.poyi.org/items/show/46223> (accessed [접속일자])’라고 표시를 하도록 안내한다.<sup>13)</sup>

<표 3> POYi 아카이브의 저작권과 사용에 관한 약관

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POYi)는 사진의 저작권이 사진사 및/또는 언론사에 있음을 존중하고 인식한다. 본 사이트에 전시된 사진을 출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사진의 원저작자나 언론사에 연락할 것을 권고한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사용 권한을 직접 취득해야한다. 사진의 재판매는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의 일반적인 사업이므로 이용허락을 받는 일이 특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POYi는 미주리(Missouri) 대학의 저널리즘 학과(School of Journalism)와 제휴하고 있으며, 저널리즘 교육 및 전문성 개발에 헌신하고자 하는 비영리, 학술 프로그램이다. 사진사와 언론사는 POYi에게 ‘올해의 국제 사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관대히 허락해주었으며 이는 오직 교육과 학술 연구목적과 ‘올해의 국제 사진’의 홍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며, POYi는 복제와 이용허락에 관해서는 사진사와 관련 기관의 권리를 존중한다.

13) ‘Urgency’의 URL은 <http://archive.poyi.org/items/show/46223>이다. [accessed 2016.05.27.].

### 3) Our Marathon, the Boston Marathon Bombing Archive & WUBR Oral History Project(이하, Our Marathon)

Our Marathon은 2013년 4월 15일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에 대한 아카이브로 사건과 관련한 사진, 비디오, 이야기, 소셜미디어 자료들을 클라우드소스 방식, 즉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노스이스턴 대학(Northeastern University), 아이언 마운틴(Iron Mountain) 등 다양한 기관과 회사들이 참여,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는 'Share' 메뉴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야기, 이미지, 이메일, 비디오, 문자 메시지, 음성녹음, 웹사이트 유형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용자는 실명과 익명 중 선택하여 공유할 수 있고, 자료의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비공개를 선택했을 때는 승인된 연구자만 이용할 수 있다. 내용 작성 후 위치, 시간, 작성자에 대해 입력하고,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신 여부,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약관을 확인할 기회를 갖는다. Our Marathon의 약관은 많은 부분이 911 디지털 아카이브나 허리케인 기억은행의 약관과 그 문구가 동일한 반면, 아카이브의 직원이 공격적이라고 판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은 약관은 홈페이지 여러 곳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아이템에도 이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있다. 예를 들어, 아카이브의 일부인 WBUR 구술 역사 프로젝트(WBUR Oral History Project) 중 'WBUR Oral History Project: Mark Hagopian'라는 아이템을 살펴보면 '권리 포기(Disclaimer)'와 '이용에 대한 안내(Information About Use Of Materials)'가 나와 있다.<sup>14)</sup> 이 중 '권리 포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

터뷰를 비롯한 WBUR 구술 역사 프로젝트의 콘텐츠는 Our Marathon, WBUR, Northeastern University 등을 비롯한 기관이나 프로젝트와 제휴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Our Marathon과 WBUR 구술 역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 보장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에 대한 안내’에는 ‘공정이용’을 넘어선 재생산 또는 인용은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인용을 위한 허락에 대한 요청은 Our Marathon (marathon@neu.edu)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인용 허락 신청에는 인용할 특정 문구의 내용, 문구의 사용 목적, 사용자의 신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 콘텐츠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는 것은 연구자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일부 글이나 사진의 아이템 중 저작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을 표시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Card from a woman in Florida’라는 아이템을 보면 ‘권리(Rights)’ 항목에 ‘권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Our Marathon은 홈페이지에 나타난 약관 외에도 콘텐츠마다 저작권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 이용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4) People’s Collection Wales(이하, 웨일즈 컬렉션)

웨일즈 컬렉션은 영국 남서부에 있는 웨일즈 지방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의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로, 웨일즈의 공동체, 지역, 가족, 산업, 전통 등에 관한 사진이나 이야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용자 참여를 받고 있다. 웨일즈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웨일즈 지역의 박물관

14) ‘WBUR Oral History Project: Mark Hagopian’의 URL은 [http://marathon.neu.edu/wburoralhistoryproject/mark\\_hagopian](http://marathon.neu.edu/wburoralhistoryproject/mark_hagopian)이다. [accessed 2016.06.17.].

15) ‘Card from a woman in Florida’의 URL은 <http://marathon.neu.edu/items/show/16724>이다. [accessed 2016.06.17.].

등 문화정보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든 프로젝트이다. 파일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 주제와 시대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웨일즈 컬렉션의 약관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중 가장 자세하고 방대하며, 다른 아카이브에는 없는 참고할만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카이브 구축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웨일즈 컬렉션은 자체 약관인 ‘Terms of Use and Privacy’와 보편적인 협약인 ‘Creative Archive License’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Creative Archive License’는 BBC 외 몇몇 기관이 함께 개발한 협약으로, 비디오, 오디오, 스틸 사진 등을 엄격한 비영리 목적일 경우 이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비영리목적일 것, 이 협약의 조건하에 2차 저작이 가능하고, 그 경우 원저작자의 크레딧(credit) 및 2차 저작자, 그 외의 기여자에 대한 크레딧을 분명히 표기할 것, 그리고 무언가를 지지하거나 명예훼손 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 것이다(BBC n.d.).

자체의 협약(Agreement)은 ‘1. 서비스, 2.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권, 3. 커뮤니티 규칙, 4. 공개, 보장에 대한 면책, 책임과 배상에 대한 제한, 5. 개인정보 보호, 6. 협약, 준거법 및 분쟁 해결, 7. 일반 규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sup>16)</sup> 이에 따르면 웹사이트 내 콘텐츠에 접근 및 이용하는 행위는 아카이브의 약관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의하는 규정은 ‘Creative Archive Licence’와 자체 규정으로 기술된 정책, 가이드라인,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웨일즈 컬렉션 역시 POYi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가 계속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Our Marathon처럼 아카이브에 기증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카이브가 규제하거나, 적법성, 진실

---

16) 원문은 ‘1. The Service, 2. Licen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Community Rules, 4. Releases, Disclaimers of Warrantie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Indemnification, 5. Privacy, 6. Agreement,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 7. General Provisions’이다.

성, 정확성을 검토하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협약의 내용 중 '3. 커뮤니티 규칙'에서는 위법한 행위들이나 저작권 침해 행위, 도덕적 법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 조치의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보통의 아카이브가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웨일즈 컬렉션은 '4.3'부터 '4.5'까지 항목에서 제공하는 기록물은 "있는 그대로 (as is basis)" 제공함으로써, 이로 인한 어떤 손실이나 피해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6. 협약, 준거법 및 분쟁 해결'은 분쟁에 대한 항목이며, 아카이브의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경우, 영국법원에 전속되어 이첩될 것을 명시한다. 끝으로 아카이브를 폐쇄, 합병, 양도할 경우 협약에 명시된 권한도 같이 물려줄 수 있음을 일반 규정의 '7.7'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 이외에도 접근, 쿠키(Cookies), 저작권에 관한 상세한 안내페이지가 있어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등록하려면 홈페이지에 'Upload' 메뉴를 통해 가능하나,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시 'Terms of Use and Privacy'에 동의해야 한다. 콘텐츠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권리 보유자를 입력하고 그가 보유한 권리 유형(저작권, 공연, 등록 상표, 미등록 상표, 디자인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권리 날짜(Rights date)'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아카이브처럼 홈페이지 내 약관의 반복적인 체크 항목은 없었지만, 'Agree to Terms' 항목에서 '나에게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Creative Archive License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에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위에 나타난 전체적인 약관 외에도 개별 콘텐츠마다 별도의 권리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 일례로 'The Parade, Llandudno, 1870s'를 살펴보면, 콘텐츠를 업로드 한 사용자, 업로드 날짜, 태그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저작권에 관한 세부사항과 라이선스 정보, 제작자,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과 저작권자에 관하여 분명히 명시하였

다.<sup>17)</sup> 웨일즈 컬렉션은 이용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시시키고 적법한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5) Digital Archive of Japan's 2011 Disasters(이하, JDA)

2011년 3월 11일부터 이어진 자연·인공 재해를 기록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Reischauer) 일본 연구소가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허리케인 기억은행과 마찬가지로 구글맵과 연동하여 해당 콘텐츠에 지역 표시를 하는 등 웹 2.0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JDA는 웹사이트, 트윗(tweet), 비디오, 오디오, 뉴스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다. JDA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파트너 프로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연동을 통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검색하고, 보고, 정렬할 수 있도록 한다. JDA에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는 웹사이트, 이야기, 이미지 등이며, 트위터 메시지, 신문기사 등과 같이 유형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유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메뉴 중 'Add to the Archive'에서 웹사이트를 추가하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 전 <표 4>의 'Terms'에 동의하여야 한다. 'JDA의 동의서'를 살펴보면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사항만 있을 뿐, 이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제출 후에는 아카이브 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한 게시글의 수정이나 삭제에 대한 안내가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911 디지털 아카이브나 허리케인 기억은행, POYi 아카이브처럼 약관을

---

17) 'The Parade, Llandudno, 1870s'의 URL은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items/7656>이다. [accessed 2016.06.17.].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도 않고, 별도의 인용표시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기증하기 전에 동의해야 하는 약관의 내용도 간략하다.

〈표 4〉 JDA의 동의서

당신의 이야기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아카이브 방문자들이 읽어도 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디지털 아카이브에 당신의 이야기를 기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메일은 방문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했을 때, 당신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으나, 그 외의 정보는 방문자가 볼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이메일 주소로 도착한 링크를 통해 게시물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

[제출]

## 6)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국내 사례로 살펴볼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와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거의 유사한 약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 약관은 각각의 홈페이지 내 ‘이용 조건’과 ‘이용 약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콘텐츠를 기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에도 구축이 진행 중인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참여한 것으로 부산지역과 관련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수집, 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에서는 허리케인 기억은행이나 JDA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와 관련된 장소를 구글맵과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각 개별 콘텐츠마다 기여자, 발행처/출판사,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자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아카이브로 민간영역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는 일상아카이브로써, 일반인의 기록을 공유하고 있다.



두 사이트의 약관을 살펴보면 크게 '1. 약관에 대한 승낙, 2. 콘텐츠 등록 및 저작권 정책, 3. 콘텐츠 활용, 4. 이용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나 허리케인 기억은행, Our Marathon 등과 마찬가지로 '2. 콘텐츠 등록 및 저작권 정책'에서는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 아카이브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가 기타 법률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대응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아카이브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 콘텐츠 활용'에서는 이용자는 제출하는 자료의 법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어야함을 분명히 하고, 제출과 동시에 그러한 법적 권리(특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를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인간과 기억아카이브에 양도함을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 기증행위는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시, 발표, 각색, 공연, 온라인 제공, 전자적 방법의 전송 등의 권리를 허용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카이브 측의 이용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을 위하여 '3.3'항목에는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콘텐츠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 제공, 전자적 방법의 전송, 공연 등에 관련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이용자에게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허용은 해당 콘텐츠가 제거 또는 삭제된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단,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제거 또는 삭제된 콘텐츠를 전시, 배포, 공연할 수는 없지만 사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이용자 의견에 대하여 귀하가 허여한 상기 라이선스는 영구적이며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아카이브의 한 가지 특색은 제출한 콘텐츠가 바로 공개되지 않으며, 온라인 공개여부 체크하더라도 아키비스트나 기록학 전문가들이 확인한 후 공개한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유형화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관련 규정

사이트 사례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콘텐츠 유형	저작권 관련 유형 3가지		
		①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명시	② 콘텐츠 등록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 여부	③ 이용을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 명시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Story)</li> <li>• 사진 또는 이미지 (Photo or Other Images)</li> <li>• 비디오(Video)</li> <li>• 오디오(Audio)</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허락 범위 표시 없음</li> <li>• Citation 표시(콘텐츠 제목,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접속일자, URL)를 명시하도록 함</li> </ul>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Story)</li> <li>• 이미지(Images)</li> <li>• 오디오(Audio)</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허락 범위 표시 없음</li> <li>• Citation 표시(저자명, 콘텐츠 제목,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접속일자, URL)를 명시하도록 함</li> </ul>
Our Marathon, the Boston Marathon Bombing Archive & WUBR Oral History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Story)</li> <li>• 이미지(Image)</li> <li>• 이메일(Email)</li> <li>• 비디오(Video)</li> <li>• 텍스트 메시지(Text Message)</li> <li>• 오디오 녹음(Audio Recording)</li> <li>• 웹사이트(Website)</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이용을 넘어서는 이용은 별도의 허락을 받을 것으로 명시</li> <li>• 일부 개별 아이템마다 저작권 표시</li> </ul>
People's Collection Wales	파일 형태로 올리게 되어있으나, 파일의 유형 제한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	○
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	나와 있지 않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허락 범위 표시 없음</li> <li>• Citation 표시(Photographer /Creator, POYI Archive 내 콘텐츠 제목, 아이템 번호, URL, 접속일자)를 명시하도록 함</li> </ul>
Digital Archive of Japan's 2011 Disas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사이트(Websites)</li> <li>• 이야기(Story)</li> <li>• 이미지(Images)</li> </ul>	×	○	×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파일(문서, 사진/이미지, 음성 녹음, 동영상)</li> <li>• 손으로 직접 쓴 기록 원본 또는 스캔/사진촬영본</li> </ul>	○	○	× (생산자, 출처, 기여자는 표시)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파일(문서, 사진/이미지, 음성 녹음, 동영상)</li> <li>• 손으로 직접 쓴 기록 원본 또는 스캔/사진촬영본</li> </ul>	○	○	× (생산자는 표시)

## 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관련 제언

앞서 법 규정과 사례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 제공받을 때뿐만 아니라 저장된 콘텐츠의 이용까지도 저작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 관련 저작권 사항을 명시하고, 이용범위에 대한 아카이브 측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본 연구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 1)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명시

국내외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기여콘텐츠 중 사실 적시 같은 '창작성'이 결여된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참여형 아카이브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독창적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의 콘텐츠 공유

는 법률상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콘텐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디지털 아카이브가 수집할 수 있는 이용자기여콘텐츠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자신의 콘텐츠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수준의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이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충돌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안내와 아카이브의 입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증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관이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한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약관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표 6〉 홈페이지 이용약관 예시

기준	예시
콘텐츠 기여자의 연령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이용자 허용</li> <li>● 일정 연령이상 허용 (아카이브의 특정 목적상 필요한 연령)</li> <li>●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li> </ul>
저작권 또는 소유권 보유, 양도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아카이브에 면책 등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스스로 생산/창작한 자료, 독창적 자료를 제출해야 함</li> <li>● 제출된 자료는 다른 사진, 문학, 기타 자료 등의 일부나 전부 에 기초 또는 복제한 것이면 안 됨(퍼블릭 도메인 등의 경우에는 기초하거나 복제할 수 있음)</li> <li>●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양한 저작권 중에서 아카이브가 허용 받고자 하는 권리 명시</li> <li>● 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음</li> <li>●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기증한 자료가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청원에 대한 면책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li> <li>● 아카이브가 보존을 위하여 자료를 이관하거나, 본 아카이브의 폐쇄, 합병, 양도 등을 이유로 저장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이관할 때(예, 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당신의 자료가 공공도서관이나 기록관에 기증될 수도 있음) 자료의 양도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까지 승계함으로 법률적 책임이나 청원에 있어 면책을 가짐</li> </ul>

콘텐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매체 변경(종이 복사, PDF 변환 등) 허용</li> <li>• 인용표시 안내(콘텐츠 이용 시 원저작자, 본 아카이브란 출처 등에 대한 크레딧 명시)</li> <li>• 제출한 자료는 아카이브 및 관련된 모든 미디어에서 영구적으로 사용, 배포 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li> <li>• 제출한 자료는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게시됨을 명시(별도로 아카이브에게 승인된 연구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li> <li>•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적 이용, 공정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li> <li>• 이 웹사이트에 안내된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전시된 이미지를 재공표(republishing)하고 싶은 개인 또는 조직은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사용권한을 취득해야 함</li> </ul>
기타 (운영상 선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자료는 기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li> <li>•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 및 보존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이메일을 통해 아카이브로 콘텐츠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아카이브는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사본을 보관할 수 있음</li> <li>• 아카이브는 당신의 이메일 등 기타의 정보를 상업적 공급 업체와 공유하지 않음</li> <li>•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콘텐츠 게시가 가능함(콘텐츠 등록 시 체크, 콘텐츠 기여자의 이름을 관리지만 볼 수 있음)</li> </ul>
약관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관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이후에도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li> </ul>

## 2) 콘텐츠 등록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할 때 약관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있고, 약관은 대체로 포괄적인 정책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용허락에 관한 부분은 내용을 확실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추후에 콘텐츠를 이용할 이용자가 허용 범위를 알고 참고할 수 있으며, 저작권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간략하고 명확하게 이용자를 안내

하는 이용허락동의서를 따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이용허락동의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등록 시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등)</li> <li>●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콘텐츠 게시가 가능함(콘텐츠 등록 시 체크, 콘텐츠 기여자의 이름을 관리자만 볼 수 있음)</li> <li>● 제출한 자료는 아카이브 및 관련된 모든 미디어에서 영구적으로 사용, 배포 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li> <li>● 제출한 자료는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게시됨을 명시(별도로 아카이브에게 승인된 연구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li> <li>● 반드시 스스로 생산한 자료, 창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li> <li>● 제출된 자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사진, 문학, 기타 자료 등의 일부나 전부에 기초 또는 복제한 것이면 안 됨(퍼블릭 도메인 등의 경우에는 기초하거나 복제할 수 있음)</li> <li>● 제출된 자료는 기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li> <li>●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적 이용, 공정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li> <li>● 아카이브는 장기보존 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이나 기록관에 당신의 자료를 양도할 수 있음</li> <li>● 콘텐츠의 재출판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한을 취득해야 함</li> <li>●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 및 보존되지 않을 수 있음</li> </ul>

### 3) 이용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 명시

홈페이지의 약관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콘텐츠마다 적용되는 저작권 사항은 다를 수 있고, 같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개별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것도 좋은 실천방법이다. 개별 콘텐츠에 저작권자, 출처, 인용표시 예시 등을 제시해 이용자들을 안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별 정보 및 저작권 표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콘텐츠별 정보 및 저작권 표시

기준	예시
콘텐츠 기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명</li> <li>• 이명</li> <li>• 무명</li> </ul>
콘텐츠 기여자 공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li> <li>• 비공개</li> </ul>
저작권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명</li> <li>• 이명</li> <li>• 무명</li> </ul>
원출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li> <li>• 개인소장</li> <li>• URL</li> </ul>
인용 표시	콘텐츠명, 아카이브명, 아이템 고유번호, URL, (accessed [접속일자])
이용허락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하는 CCL 표시</li> <li>• 협의 중일 경우 '협의 중' 표시</li> <li>•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여러 이용행위 중 허용 범위 명시</li> </ul>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주는 방안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CCL이다. CCL은 'Creative Commons'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용을 활성화 하고 저작권에 대한 쉽고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CCL은 저작권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방법으로, "저작자나 저작권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권리 관리의 수준을 정확히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조건하에서 공유를 허용하고자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술적 수단의 포괄적인 시스템"이다(Brown 2003, 96). 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CL의 문제점으로 "UCC 자체의 원본성 내지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김운명 2007, 185), "CCL 사용의 어려움, 로고의 비통일성, 적용 및 노출의 통일성"(서준호 2012, v) 등이 지적되었으므

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CL 표시와 더불어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아카이브 측에서 저작권자들과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둘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2가지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면, 이용자는 CCL을 보고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 CCL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아카이브가 구축한 연락망을 토대로 이용자와 저작권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와 이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7. 맺음말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매일 많은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손실 없는 복제, 전송, 유통이 너무나 손쉬워진 디지털 환경에서는 합법과 불법, 위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많은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고,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속하게 되는지 혼동할 수 있다. 더구나 「저작권법」은 비교적 개정이 잦은 법률 중 하나이고,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찬동 2007, 1). 따라서 아카이브가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법률관계를 포함한 아카이브의 지침을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안정되게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디지털 아카이브의 책임이 된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자료로 등록되는 콘텐츠들 중 이용자기여콘텐츠는 온라인으로 공개된다는 점, 비전문적인 일반인이 생산 주체라는 점



에서 기존의 자료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용자기여콘텐츠의 이용과 보호를 위하여 법규를 신설하거나 제도를 제안하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적절한 규범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존의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들의 약관 사례들과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약관에 필요한 항목, 아카이브에 이용자기여콘텐츠를 수집할 때 받아야 하는 이용허락동의서 내용,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개할 때 제시해야 하는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제안하여,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등의 아카이브 사례와 법제도를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후속연구로 국내외 판례를 통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련된 실제 저작권 분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은 제102조부터 104조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 있고, 어떻게 해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약관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 시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n.d. 검색어 “유시시”. 검색일자: 2016.05.28. [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23390&mn\\_id=34](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23390&mn_id=34)
- 권형돈. 2007a. 공영방송사제작 프로그램의 공공이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언론과 법』, 6(1), 1-30.

- 권형돈. 2007b. UCC의 저작권 침해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장. 『공법연구』, 6(1), 377-402.
- 김윤명. 2007. UCC의 법률 문제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38, 160-188.
- 김정술. 199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재판자료 57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下)』, 57, 265-331.
- 김정환, 김성철, 윤영민. 2011. 언론사의 내부자원이 뉴스에서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활용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3), 33-62.
- 김찬동. 2007.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판단 기준. 『SW IPReport』, 32, 1-6.
- 두산백과사전. n.d. 검색어 “ucc”. 검색일자: 2016.05.03.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98714](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98714)
-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d. Retrieved 2016.06.17. from <https://www.archives.gov/>
- 배대현. 2006.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21, 147-191.
- 서준호. 2012. 『UCC 활성화를 위한 CCL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전공.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2a.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17-342.
- 설문원. 2012b.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손정민. 2016. 이용자생산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플랫폼에서 생산자 참여 전·후의 이용자 기여 성과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31(1), 31-55.
- 신지혜. 2009. 디지털 아카이빙과 집적물의 이용 방안. 『Law & technology』, 5(5), 20-38.
- 양형규, 최종호. 2010. UCC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시스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5(2), 35-39.
- 영국국립아카이브(The National Archive). n.d. Retrieved 2016.06.17. from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 오승중, 이해완. 2005.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우지숙. 2008.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 판례의 시사점. 『계간저작권』, 83, 78-102.
- 유대중, 신재호, 김형렬, 김윤명. 2010.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서울: 경인문화사.
- 윤영민, 김성철, 김정환, 이현기. 2011. 국내언론사 뉴스룸의 사용자제작콘텐츠(UGC) 수용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방송학보』, 25(4), 139-175.
- 윤용근, 하병현. 2013. 『저작권 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서울: 넥센미디어.
- 이대희. 2007a. 사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1(1), 205-229.
- 이대희. 2007b. UCC와 저작권. 『정보처리학회지』, 14(3), 69-74.
- 이선수. 2006. 한국형 디지털 콘텐츠물 구축 방안 연구. 『인문콘텐츠』, 8, 357-376.
- 이종윤. 2010. 도서관의 이용자생성 디지털콘텐츠 계시에 따른 저작권침해 방지방안 연구. 『디지털도서관』, 59, 67-101.
- 이철남. 2011. 저작권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 『계간저작권』, 24(4), 77-102.
- 이철남. 2013.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江原法學』, 40, 63-92.
- 이철남. 2014.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증자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1), 241-266.
- 이해완. 200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이호신. 2013.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333-355.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n.d. 검색일자: 2016.06.18. <http://hmmarchives.org/>
- 임광섭. 2010. 『UGC와 공정이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 정진명. 2007. UCC의 보안과 인증 : 법의 역할과 관계. 『정보법학』, 11(1), 231-254.
- 조원. 2014. 『재한국 중국 유학생의 동영상 UGC 이용동기』.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언론학 전공.
- 조정욱. 2015.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 :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 최경진. 2007. UCC에 관한 법적 고찰. 『디지털재산법연구』, 6(1), 47-62.
- 최상필. 2010. UCC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재산법연구』, 26(3, 下), 183-207.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미국 저작권법 (2010년 번역)』.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색일자: 2016.06.17.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9321>
- 허희성. 2011.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上)』. 서울: 명문프리컴.
- 현문수. 2014.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기록학연구』, (41), 3-38.
-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기록학연구』, 42, 245-285.
- 홍재현. 2008. 『도서관과 저작권법』. 경기도 고양시: 조은글터.
- 황용석, 주용완. 2006. 『건강한 UCC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BBC. n.d. Creative Archive Licence. Retrieved 2016.06.17. from <http://www.bbc.co.uk/creativearchive/licence/index.shtml>
- Brown, G. O. (장성환 역). 2003. 일부권리제한: Creative Commons와 합리적인 저작권의 토대 쌓기. 『계간저작권』, 63, 96-104.
- Daughertya, T., Eastina, M. S. & Brighta L. 2008. Exploring Consumer Motivations for Creating User-Generated Content.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8(2), 16-25.
- Digital Archive of Japan's 2011 Disasters. n.d. Retrieved 2016.05.10. from <http://www.jdarchive.org/ja/home>
- Haskins, E. 2007. Between Archive and Participation: Public Memory in a Digital Age. *Rhetoric Society Quarterly*, 37(4), 401-422.
-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n.d. Retrieved 2016.05.04. from <http://hurricanearchive.org>
- Huvila I. 2008. Participatory archive. *Archival Science*, 8(1), 15-36.
- Janer, J., Roma, G. & Kersten, S. 2011. Authoring augmented soundscapes with user-contributed content. *ISMAR Workshop on Authoring Solutions for Augmented Reality*. Basel, Switzerland. Retrieved from [http://mtg.upf.edu/system/files/publications/ISMAR\\_auth\\_mtg.pdf](http://mtg.upf.edu/system/files/publications/ISMAR_auth_mtg.pdf)
- Jian, L. & MacKie-Mason, J. K. 2012. Incentive-Centered Design for User-Contributed Content. *The Oxford Handbook of the Digital Economy*. Retrieved from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100229/icd4ucc.pdf?sequence=1>
- OECD-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2007. *Participative Web: User-Created Content(DSTI/ICCP/IE(2006)7/FINAL)*.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sti/38393115.pdf>

- Our Marathon, the Boston Marathon Bombing Archive & WUBR Oral History Project, n.d. Retrieved 2016.06.17. from <http://marathon.neu.edu/>
- People's Collection Wales, n.d. Retrieved 2016.06.17. from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
- 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POYi) Archive, n.d. Retrieved 2016.05.04. from <http://archive.poyi.org>
-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n.d. 검색일자: 2016.06.18. <http://bpa.localityarchives.org/>
- Sedgwick, J. M. 2008. *Let Me Tell You about My Grandpa : A Content Analysis of User Annotations to Online Archival Collections*. North Carolina: Chapel Hill.
-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n.d. Retrieved 2016.05.04. from <http://911digitalarchive.org>
- Solachidis, V., Mylonas, P., Geyer-Schulz, A., Bettina Hoser, Chapman, S., Ciravegna, F., ... Avrithis, Y. 2009. Collective Intelligence Generation from user contributed content. In Fink, A., Lausen, B., Seidel, W. & Ultsch, A. (Eds.), *Advances in Data Analysis, Data Handling and Business Intelligence* (pp. 765-774). Berlin ; Heidelberg: Springer.
- Wikipedia, n.d. 검색어 "User-generated content". 검색일자: 2016.04.26. [https://en.wikipedia.org/wiki/User-generated\\_content](https://en.wikipedia.org/wiki/User-generated_content)